

(가칭)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(가칭)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,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
- 나. 이에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기획·운영하고,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·자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(가칭)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- 소재지 : 노원구 동일로 231 다길 10 (상계동1071-2)
- 규모 : 대지 521.2㎡ / 연면적 1,683㎡(지하1층~지상5층)

○ 준공일 : 2020. 6.(예정)

○ 공간구성(안)

구분	면적(m ²)	용도	
지상	5층	170	사무공간, 직원휴게실
	4층	288	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(3), 교재교구실
	3층	288	요리교실 등 다용도 활동공간, 전문인력교육장 겸용
	2층	288	열린 놀이공간, 문·예·체 프로그램 운영실(4개), 작은 휴식공간
	1층	225	안내, 후정 놀이터, 독서·휴식공간, 보호자 대기공간, 관리실 등
지하	1층	244	다목적 체육놀이실, 현관, 내외부 창고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위탁기간 : 2020. 4월 ~ 2023. 3월(3년간)
-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조직 및 운영(안) : 4팀, 21명 (센터장 1, 종사자 20)

센터장(1)

운영총괄

기획예산팀(4)

-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
- 조직, 인사, 예산·결산, 지출, 총무
-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
돌봄운영팀(9)

- 콘텐츠 구성 및 운영
- 문·예·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·운영

돌봄자원연계팀(3)

-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인프라 구축
-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

시설팀(4)

- 전기·통신·기계 시설물 유지보수
- 안전관리 및 건물·주차장 관리
- 차량관리 및 운행

※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·운영 TF를 통해 적정 인력 및 조직구성, 세부 직무분석안 마련 예정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-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-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-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-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

○ '20년 소요예산(안) : 1,353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다.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」 (시장방침 제33호, 2019.3.6.)
-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계획」
(아이돌봄담당관-5588, 2019.4.29.)
- 「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」
(아이돌봄담당관 - 10676(2019.8.23.))
- 「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
후속절차 안내」 (조직담당관-11925, 2019.9.19.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,000㎡ 이상 규모의 복지시설로 20~25명 수준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아동복지법 제44조의2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, 2014.5.14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예외적 동시상정

- '19.6월 제287회 정례회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예산이 반영되었고, 이후 지역별 돌봄수요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 발굴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8월경 대상지 확정과 운영기능이 구체화 되었음

- 예산반영 즉시, 적정 지역 분석과 물건확보를 조속히 진행하긴 했으나 시기적인 한계가 있어
- '19.8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,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9.6.)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피했고, 이에 부득이 거점형키움센터 1호점에 대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예외적으로 동시상정하게 되었음

※ 작성자 : 아이돌봄담당관 초등돌봄운영팀 박진영 (☎ 2133-4944)